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2992호
----------	--------

제출년월일 2022. 03. 07.
제출자 김계순 의원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2년 3월 7일 김계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영상 등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최근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혀 온라인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여 영상문화의 생활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